

미국과 캐나다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 법제에 관한 연구

2014. 7. 8.

기후변화법제 자료 14-19-⑥

미국과 캐나다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 법제에 관한 연구

2014. 7. 8.

일 정

1. 일 시 : 2014년 7월 8일(화) 15:00~17:30

2. 장 소 : 용산역 ktx 1실

3. 세부일정

발 제

○ 주요 연구내용 개관(15:00 - 15:30)

-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제발표(15:30 - 16:20)

미국의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WAP과 LIHEAP)

- 진상현(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토 론(16:30 - 17:30)

- 박광수(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류권홍(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목 차

I. 에너지복지의 의의	10
II. 에너지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3
III. 미국의 에너지복지 정책	17
IV. 국내의 에너지복지 입법 동향	22
V. 에너지복지의 원칙, 대안 그리고 최근 동향	26

에너지복지정책과 입법 동향

- 미국을 중심으로 -

발표자 :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에너지복지정책과 입법 동향:

미국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2014. 7. 8
진상현
upperhm@knu.ac.kr



연구목차

- I. 에너지복지의 의의
- II. 에너지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III. 미국의 에너지복지 정책
- IV. 국내의 에너지복지 입법 동향
- V. 에너지복지의 원칙, 대안 그리고 최근 동향



1. 에너지복지의 의의



차기정부의 쟁점: 복지사회

- 미래한국리포트(2012.11.1)



미래한국리포트

제10차 미래한국리포트

미래한국리포트 소개

- 개요주요보고서
- 다시보기
- 행사사진

미래학교

대학 100대 명 강의

지난 미래한국리포트

- 제1차
- 제2차
- 제3차
- 제4차
- 제5차
- 제6차
- 제7차
- 제8차
- 제9차

SBS

Seoul Digital Forum

사이트맵 | 문의

제10차 미래한국리포트

Home > 10차 미래한국리포트 >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개요

PROGRAM OVERVIEW

제10차 미래한국리포트

“착한 성장사회”를 위한 리더십

일시: 2012년 11월 1일(목) 오전 7시 ~ 9시 30분

장소: 서울 신라호텔 다이내스티룸

<제10차 미래한국리포트 보고서 다운로드>

보고서 1. 무엇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정책권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다운받기]

보고서 2. 기묘해 선 한국 (교회권 SBS미래부 차장) [다운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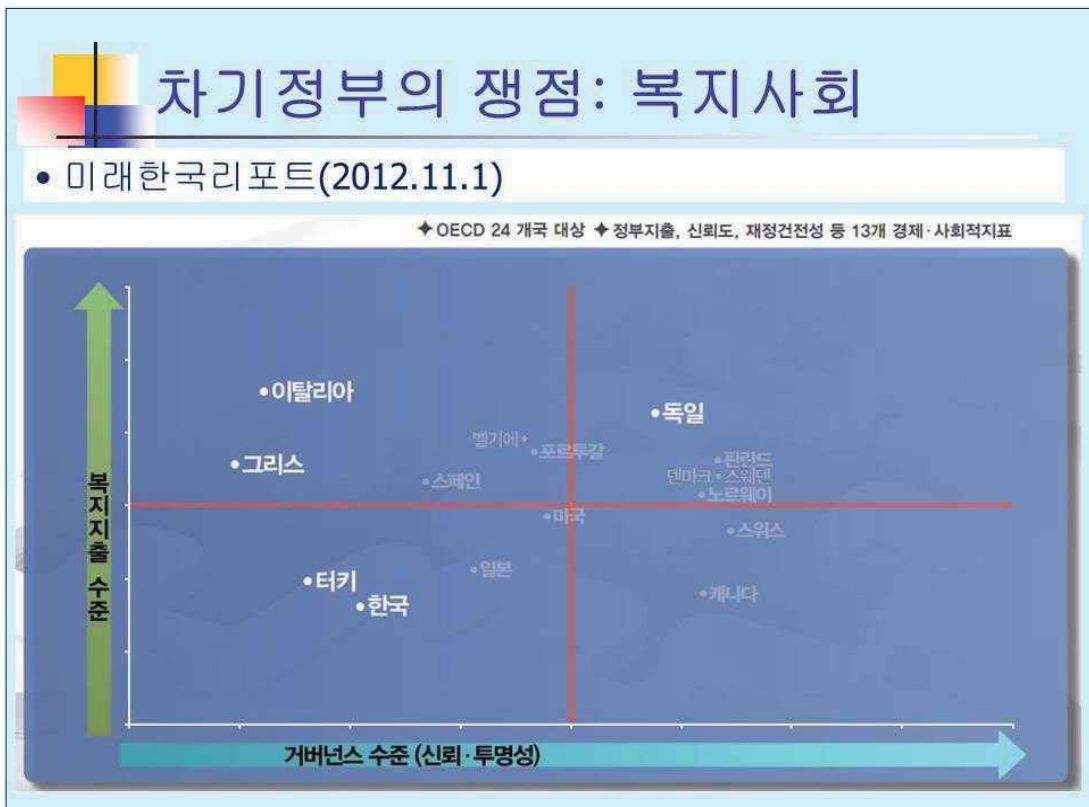
보고서 3. [착한 성장사회를 위한 방법] 일거리 있는 성장 (현역석 KDI원장) [다운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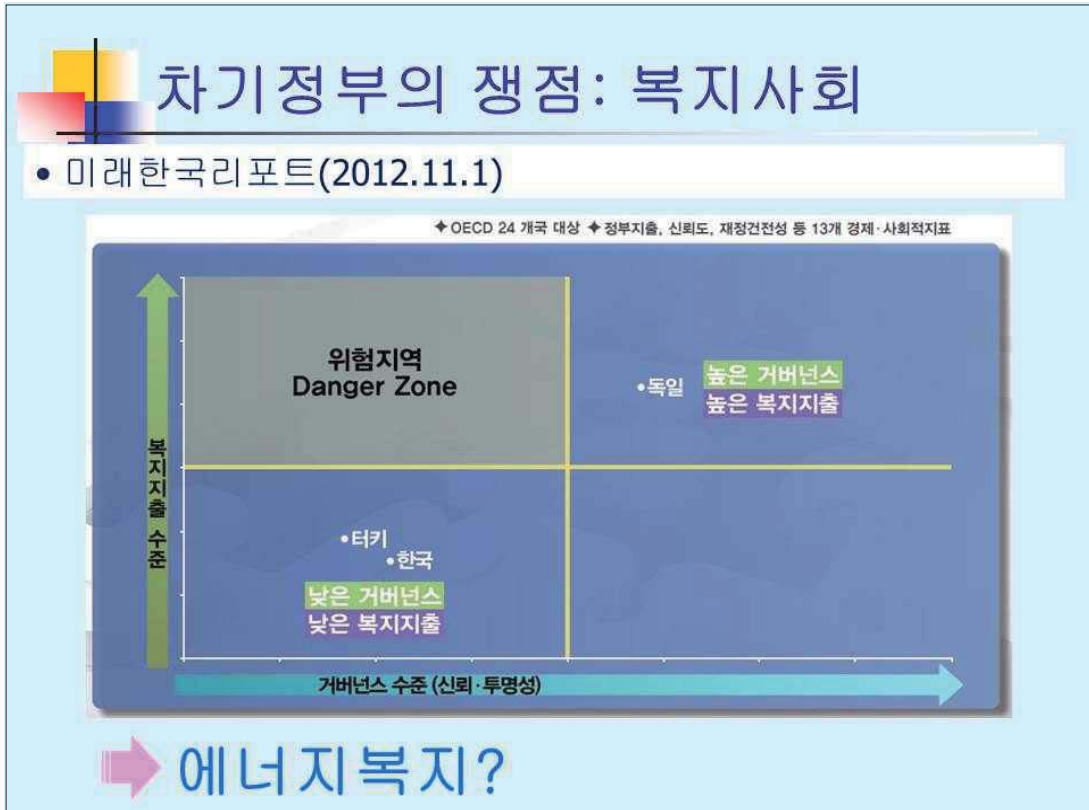
보고서 4. [착한 성장사회를 위한 해법] 고용인화 복지 (정책권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다운받기]


보고서 5. [착한 성장사회를 위한 방법의 핵심] 국가로 가는길 (이민화 KAIST교수) [다운받기]

보고서 6. SBS재팬 [다운받기]


보고서 7. 여성후보연설(박근혜, 안철수) [다운받기]







II. 에너지복지정책의 현황 과 문제점



II. 에너지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에너지빈곤 개념
 - 미국의 에너지부담(Energy Burden): 가구 소득 중 에너지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율을 의미함(US DHHS, 2005).
 - 에너지부담비율>10.9% : 에너지부담이 높음
 - 에너지부담 비율>6.5% : 중간
 - 영국의 에너지빈곤(Fuel Poverty): 거실의 온도 21℃, 거실 이외 실의 온도 18℃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로 사용하는 가구 (Fuel Poverty Strategy, 2001)

II. 에너지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에너지복지
 - 참여정부: 모든 국민이 소득에 관계없이 기초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이태수, 2009)
 - 모든 국민이 소득과 관계없이 **에너지빈곤**의 고통을 격지 않도록 하는 제도(박광수, 2006)
- 빈곤의 개념 및 유형

객관적 에너지 빈곤	절대적 에너지 빈곤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기준값 보다 에너지를 적게 가진 상태
	상대적 에너지빈곤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에너지를 적게 가진 상태
주관적 에너지 빈곤		자신이 에너지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

자료: 진상현·박은철·황인창(2010).

II. 에너지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절대적 에너지빈곤 대상 추정
 - 빈곤선 (Poverty Line):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절대적 최소 한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최소생계급여가 사용됨 (2008년 4인 가족 1,265,848원 기준)
 - 에너지 빈곤선 (Energy Poverty Line): 최소생계급여 중 광열비(光熱費) 68,430원 / 66950원이 빈곤선으로 사용됨

소득분위	에너지빈곤가구 비율 (%)
1	35
2	28
3	24
4	20
5	22
6	13
7	15
8	12
9	12
10	7

- 추정 결과: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 가구의 절대적 에너지 빈곤층은 **8.0%**

II. 에너지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상대적 에너지빈곤 대상 추정
 - 빈곤기준: 저소득 가구, 즉 하위 30%의 가처분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비율인 11.47%

소득분위	상대적 에너지 빈곤층 (%)
1	38
2	24
3	11
4	8
5	7
6	2
7	2
8	1
9	1
10	1

- 추정 결과: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 가구의 상대적 에너지 빈곤층은 **6.8%**

II. 에너지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에너지빈곤의 원인 및 영향

• 원인

- 소득/풍요도
- 지출우선순위
- 주택의 열 효율성
- 난방시설
- 연료비용

→

• 에너지빈곤


- 적절한 따뜻함
- 에너지비 효율
- 저소득

→

• 영향

- 온실가스 배출
- 계절적인 사망
- 만성질환

자료: Sustainable Energy Ireland(2003), *A Review of Fuel Poverty and Low Income Housing* 수정




II. 에너지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현황
 - 에너지복지 관련 법
 - 「에너지법」 제4조 제5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함
 -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안건에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에너지공급 등 에너지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
 - 법적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중 광열비 지원
 -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등을 통한 저소득층 난방관련 사업
 - 정책적 지원
 -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II. 에너지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대상
전력	단전유예	혹서기(7~9월) 혹한기(12~2월)	주거용 전기제한 공급대상가구
	전류제한공급(전류제한장치)	220W(10,000대 운영)	주거용 체납가구
	요금할인	20%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
가스	공급중단 유예	'05년 동절기(10월~3월) '06년 동절기(10월~3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요금할인	산업용요금 적용	사회복지시설
	석탄, 연탄 가격보조	가격보조 (최고가가격과 생산원가차액)	제한없음
연탄	연탄현물 (쿠폰)보조	연탄가격인상에 따른 현물보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	기본요금 전액감면
에너지기기	고효율조명기기	무상보급	저소득가구, 사회복지시설
가스 안전기	LP가스 퓨즈 콕	무상설치	미설치가구
난방지원사업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무상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난방연료현물지원	에너지 긴급지원	무상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II. 에너지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문제점
 -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되지 않고 있음.
 - 생계급여 중에 광열비와 같이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되는 프로그램도 있으나, 대부분은 에너지공급기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고 있음.
 -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전달체계를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인지하는 개인의 신청에 따라 지원되는 한계가 있음.
 -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 최저생계비 이하의 비수급자,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구) 중에 에너지빈곤 상태에 처한 가구도 정책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비싼 비용을 지급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원을 바꾸기 위한 정책(도시가스시설 인입비용 지원 등),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 등은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지자체의 경우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함(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과 **S-Habitat**를 통한 난방관련 사업을 제외).



III. 미국의 에너지복지 정책

III. 미국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 주택단열지원사업(WAP: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 1976년 제정된 『에너지보전 및 생산법(Energy Conservation and Production Act)』을 근거로 하여 **에너지부(DOE)** 주관 하에 실시함.

- 가구소득이 빈곤선의 **150%** 이하인 가구로서 장애인 및 노인, 어린이가 있는 가구가 **우선 사업 대상**임. 가구당 지원금 한도는 **2,500 달러**이며, 재생가능에너지 설비 설치시에는 **3,000 달러**임.
- 1달러투자시 가구당 에너지비용 절감액은 **1.65달러**이며, 에너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지역사회의 간접편익은 **2.72달러**인 것으로 평가됨 (DOE, 2008).
- 2009년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제정으로 사업 확대 (가구당 지원 한도 **\$2,500**에서 **\$6,500**으로 증가)

에너지빈곤 퇴치

- 에너지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저소득가구 대상
- 노인, 장애인, 아동가구 등 취약가구 포함
- 가구당 매년 에너지비용 413 달러 이상 절감 효과
- 전국적으로는 19억 달러 절감(08년)
- 가스 난방가구의 경우 23% 에너지소비 절감
- 기본적인 필요(의료, 식료품) 등을 위한 자금 확보

투자

- 매년 10만 가구 주택단열화
- 1달러 투자시 2.72달러 회수
- 에너지비용 절감 1.65달러
- 간접효과 1.07달러
- 지역 고용 창출
- 에너지비용 미지불 감소
- 주택개선, 건강 및 안전 증가

경제

- 주택단열지원사업 2억 달러 투자(07년)
- 8천 개 일자리의 수천 개 간접고용효과
- 에너지가격 상승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 에너지효율적인 주택 확보, 경제활동 증가 등에 따른 지역사회 혜택

기후변화

- 가구당 CO2 배출량 매년 1.79톤 감소
- 가구당 매년 에너지비용 413 달러 이상 절감 효과
- 전국적으로는 19억 달러 절감(08년)
- 가스 난방가구의 경우 23% 에너지소비 절감
- 기본적인 필요(의료, 식료품) 등을 위한 자금 확보

주목단열지원사업 Weatherization Works

자료 : DOE, 2008,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Briefing book

III. 미국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 주택단열지원사업(WAP)

- 에너지부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며, 각 주에서는 900여개 지역 사업체에 배분(**대표적 협력사례**)
- 예산은 1995년에 개정된 할당공식에 따라 각 주에 배분됨(저소득비중, 기후, 에너지빈곤도).

$$\text{주별예산} = (\text{예산총액} - \text{기본예산} - \text{훈련 및 기술지원 예산}) \times \frac{F_1 \times F_2 \times F_3}{\sum_i F_1 \times F_2 \times F_3}$$

$$F_1 = \frac{\text{저소득가구수}_i}{\sum_i \text{저소득가구수}_i} \times 100(\%)$$

$$F_2 = \frac{\text{각주의 난방도일}}{\text{전국 난방도일 총위수}} + \frac{\text{각주의 냉방도일}}{\text{전국 냉방도일 총위수}} \times 0.1$$

$$F_3 = \frac{\text{각주의 저소득가구 에너지비용}}{\text{전국 저소득가구 에너지비용 총위수}}$$

자료 : DOE, 2008,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Briefing book

미국 에너지부(DOE)
에너지효율 및 재생가능에너지국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골드필드 사무국
Golden Field Office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
NETL


지방자치단체
50개 주/ 콜롬비아 자치구역/ 원주민 자치구역 등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뉴욕, 버지니아 등

지역 사업체

지역 사업체



III. 미국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 WAP 뉴욕주 사례
 - 1977년 이후 약 50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단열지원 사업을 실시했으며, 주택 및 커뮤니티재생국(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에서 사업을 총괄함.
 - 총 62개 카운티에 64개의 지역사업체가 운영 중이며, 2009년에는 20,450가구에 주택단열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가구당 평균 사업비용은 4,500 달러임.
 - 연평균 가구소득이 뉴욕 주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함
 - 2009년의 경우 뉴욕 주의 주택단열지원사업 총예산은 1.05억 달러였으며, 미국 모든 주 중에서 가장 높았음. 뉴욕 주는 다시 지역사업체에 2003년에 개정된 할당 공식에 따라 뉴욕 주 총 예산을 배분하고 있음.
 - 주정부는 주택단열지원사업 매뉴얼을 작성하여 지역사업체를 지도하고 있음. 또한 지역상황을 고려한 독자적인 에너지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음.
 - 저소득가구 중 세입자가구의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한 서비스 목표를 설정함.
 - 임차건물에서 사업을 실시할 경우 집주인에게 사업비의 25~35%를 부담함.
 - 2013년 WAP예산은 71백만달러 (= 14DOE + 57LIHEAP)



III. 미국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 WAP 뉴욕주 사례

구분		주택유형		
		1~4가구 거주주택	4가구 이상 거주주택	전체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절감액	난방	815달러	527달러	-
	전기	165달러	82달러	-
2009년 사업가구		7,158	13,193	20,450
연간 총 에너지절감액		701만 달러	809만 달러	1,510만 달러
가구평균 사업비용		4,500달러	4,308달러	-
설치기기의 내구연한 동안 총 에너지절 감액		14,696달러	9,134달러	-
비용편익 비율(B/C ratio)		3.27	2.12	-

자료 : New York State DHCR, 2009, New York State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III. 미국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 저소득가구 에너지지원 프로그램(LIHEAP)

- LIHEAP: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 1981년 제정된 『옴니버스 예산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을 근거로 하여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주관 하에 실시되고 있음.
- 저소득가구, 특히 에너지 부담이 큰 최하위소득가구의 즉각적인 에너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각 주는 연방빈곤선(poverty level)의 150% 이하 소득 또는 주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가구를 대상가구로 선정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6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취약가구가 우선 대상임.
- 프로그램은 난방지원과 냉방지원, 에너지긴급지원, 주택단열지원이라는 네 가지 세부프로그램으로 구성됨.

III. 미국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 저소득가구 에너지지원 프로그램(LIHEAP)

Table B-2. LIHEAP Funding by State: FY2006 to FY2012.
(dollars in millions)

State (includes tribal allocations)	Total Funds Distributed (regular and emergency contingency)						
	FY2006	FY2007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Alabama	31,972	22,205	19,221	64,274	69,016	61,570	47,408
Alaska	18,472	12,454	16,856	30,928	28,182	24,727	18,002
Arizona	15,399	8,551	9,296	31,064	37,422	33,844	23,852
Arkansas	23,326	15,749	14,667	39,711	40,000	36,400	28,537
California	157,626	94,855	103,117	248,487	234,215	211,534	154,574
Colorado	44,842	33,073	41,326	71,352	70,475	65,035	47,308
Connecticut	71,106	48,102	65,618	125,887	107,845	102,919	79,532
Delaware	10,954	5,727	6,929	16,748	16,847	15,854	11,957
District of Columbia	8,165	6,700	7,284	16,249	16,067	14,641	10,687
Florida	49,798	27,977	30,414	101,791	129,014	110,780	78,040
Georgia	40,026	28,564	24,947	80,410	102,091	87,862	61,702
Hawaii	2,567	2,328	2,403	3,182	4,589	4,320	6,107
Idaho	14,772	12,901	13,914	30,012	30,158	28,199	20,574
Illinois	193,814	119,418	145,214	265,679	265,542	248,941	185,684
Indiana	75,234	54,069	47,561	116,487	117,575	107,584	80,006
Iowa	32,054	38,319	47,881	76,929	74,524	71,388	54,813
Kansas	27,722	19,746	22,137	49,541	44,262	43,924	32,160
Kentucky	45,320	32,010	30,588	75,055	67,832	61,111	46,423
Louisiana	32,471	22,499	19,651	61,502	59,054	54,895	43,422
Maine	45,146	33,719	46,356	79,187	60,428	56,241	39,982
Maryland	61,889	33,036	35,913	109,164	90,005	88,926	69,790
Massachusetts	126,476	93,795	126,492	213,500	196,402	183,854	132,731
Michigan	154,471	113,377	141,667	249,416	276,447	238,425	173,450
Minnesota	110,649	81,481	102,063	163,983	160,089	152,559	118,839
Mississippi	27,467	17,871	16,479	42,422	46,650	40,635	31,591
Missouri	78,220	52,645	59,603	114,962	107,145	100,193	68,231
Montana	22,789	15,132	18,907	35,202	34,530	33,072	24,135
Nebraska	28,643	18,950	22,679	44,066	42,893	41,447	30,226
Nevada	7,247	4,016	4,366	14,599	18,218	15,868	11,203
New Hampshire	27,740	18,769	25,435	47,773	37,423	36,050	26,055
New Jersey	115,046	80,120	108,707	188,707	199,455	188,792	136,746
New Mexico	12,491	10,705	11,638	27,451	24,739	23,543	17,074

State (includes tribal allocations)	Total Funds Distributed (regular and emergency contingency)						
	FY2006	FY2007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New York	382,251	261,604	359,628	518,243	537,348	521,923	375,710
North Carolina	72,412	45,974	42,383	132,528	127,139	116,205	83,011
North Dakota	24,680	16,438	20,539	38,240	36,668	35,936	26,218
Ohio	164,226	105,643	132,004	245,750	253,035	234,875	165,463
Oklahoma	29,543	19,282	17,668	52,878	53,190	49,378	36,094
Oregon	35,116	25,633	27,650	51,460	52,029	47,861	36,666
Pennsylvania	202,324	140,520	191,759	308,394	315,337	294,486	209,548
Rhode Island	23,131	15,471	20,875	38,653	34,444	31,274	23,241
South Carolina	25,279	17,636	15,366	51,047	56,232	48,649	36,270
South Dakota	20,117	13,350	16,681	31,058	29,989	29,259	21,293
Tennessee	47,139	33,568	30,985	80,512	84,890	74,260	55,405
Texas	84,005	46,545	50,599	169,196	212,807	184,201	129,822
Utah	23,285	15,389	19,204	35,755	35,003	33,537	24,513
Vermont	20,903	14,162	19,370	36,156	27,941	26,959	19,529
Virginia	75,053	40,241	43,746	127,668	109,927	107,215	80,436
Washington	41,226	42,163	45,481	84,645	83,989	78,688	60,310
West Virginia	24,543	18,421	20,157	45,019	43,363	40,786	29,700
Wisconsin	99,837	73,525	91,872	147,608	145,214	137,390	105,172
Wyoming	9,284	6,153	7,689	14,315	14,124	13,444	9,815
Subtotal to states and tribes	3,129	2,131	2,587	5,068	5,066	4,694	3,437
Territories ^a	3,456	2,788	3,014	6,734	6,816	6,322	4,661
Leveraging/REACH ^b	27,225	27,225	—	27,000	27,000	0	26,949
Training/tech assist ^c	0,297	0,297	0,292	0,300	0,300	0,300	2,994
Total	3,160	2,161	2,591	5,100	5,100	4,701	3,472

Sources: Compiled by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using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data.

- a. The totals shown in these columns include regular fund allocations to states and tribes, and any contingency funds awarded to states and tribes in that year.
- b. The statute provides that HHS must set aside not less than one-tenth of 1% and not more than one-half of 1% for use in the territories (American Samoa, Guam, Puerto Rico, Northern Mariana Islands, and the U.S. Virgin Islands).
- c. The statute provides a separate funding authorization for competitive grants under the leveraging incentive program (designed to encourage states to increase non-federal support for energy assistance). It also provides

III. 미국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 저소득가구 에너지지원 프로그램(LIHEAP)


**Table 2. LIHEAP Households Receiving Heating and Winter Crisis Assistance
FY2000-FY2009**

Fiscal Year	Funding Distributed ^a (\$ in millions)	Households Assisted			Average Benefits	
		Households Receiving Assistance (millions)	Households Federally Eligible for Assistance (millions)	Percentage of Federally Eligible Households Receiving Assistance	Nominal Dollars	Constant 1981 Dollars ^b
2000	\$1,844	3.9	29.4	13%	\$270	\$140
2001	1,856	4.8	30.4	16	364	187
2002	1,800	4.4	32.7	13	291	147
2003	1,988	4.8	34.5	14	312	154
2004	1,889	5.0	35.4	14	277	132
2005	2,162	5.3	34.8	15	304	140
2006	3,160	5.5	34.4	16	385	171
2007	2,161	5.3	33.6	16	320	139
2008	2,591	5.4	33.5	16	362d	151
2009	5,100	7.4	35.0 ^c	21	502	209


Source: Data regarding households assisted, federally eligible households, and benefit levels for FY2000 to the present are drawn from the LIHEAP Home Energy Notebooks for FY1998 through FY2009. Data for FY1983, FY1990, and FY1993 come from the LIHEAP Reports to Congress.

III. 미국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 LIHEAP 뉴욕 주 사례
 - 긴급·장애인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주관 하에 실시되고 있으며, 난방지원과 위기상황지원, 주택단열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냉방지원 제외).
 - 뉴욕 주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취약자가구를 우선 고려함.
 - 대상가구의 특징에 따라 프로그램은 직접지불(regular direct heating)과 간접지불(regular heat included), 난방기기 수선 및 교체, 긴급지원 등으로 구분됨.
 - 2009년 현재 58개의 지역사업체가 운영 중이며, 지역사업체는 주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실사 및 홍보활동을 함.
 - 2013년 4월부터 냉방 지원 추가(열사병 등의 서류를 근거로 \$800한도 내에서 에어컨 설치·구매 지원)




IV. 국내의 에너지복지 입법 동향



1. 에너지복지법의 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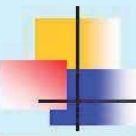
※ 법제화 과정: 지식경제부 「에너지복지법」 제안 (2010.10) / 진보신당 조승수 (2011.11), 민주당 노영민 (2011.12) → 무산

- 제1조 (초안)
 -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 및 에너지소비의 형평성 제고에 이바지함”
- 문제점
 - “형평성 제고”라는 개념의 문제
 - “에너지 빈곤” 개념의 부재
 - 정책 대상으로서 ‘에너지빈곤가구’ vs ‘수급권자’의 개념 문제
- 개선안
 - ➡ 법의 목적(제1조)는 “에너지빈곤의 해소 및 에너지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으로 개정이 필요함



2. 에너지복지법의 정책방향

- 제21조 (에너지급여의 내용)
 - “1. 에너지구입비용 지원(공급)”과 “2. 에너지소비효율개선 지원(수요)”
- 문제점
 - 에너지복지정책 추진 방향, 즉 ‘중요도’가 아닌 ‘우선순위’의 부재
 - 효율개선(1차) → 에너지공급(2차 / 불가피한 공급분으로 제한)
- 개선안
 - ➔ 제25조 (신청에 의한 조사)를 “진단”으로 개정해서 에너지정책의 추진방향 및 원칙을 반영해야 함 (진단의 의의: 에너지빈곤의 판단 및 가구별 맞춤형 에너지복지정책의 설계)



3. 에너지복지법의 수혜대상

- 제3조 (수급권자의 범위)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와 “2. 차상위계층 등”
- 문제점
 - 수급권자 전용의 문제?

구분	R (최저생계비 중 광열비 대비 에너지비용)
수급가구	0.98
차상위계층	0.77
기타 저소득	1.15
전체	0.99

자료: 진상현 · 박은철, 2009.

- 추가적 지원대상, 즉 ‘절대빈곤’ 가구는?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5. 에너지복지법中 에너지이용권

- 제16조 (에너지복지기여금)
 -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기 위해 ... 전기, 가스, 열에너지 판매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 에너지복지기여금을 부과·징수한다”
- 문제점
 - 에너지복지기여금은 전기, 가스, 가격할인정책과 상충됨
 - 자원배분의 효율성?
 - 전력의 가격 탄력성
 - 필수재로서의 전력

2. 지원방식의 문제

- 가격 할인 지원 프로그램
 -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 소비량이 많을수록 지원 증가

사용량구간(kWh)	가구수	비중(%)	소비량	요금	할인액
0~100소계	46,603	9.7	100	6,500	1,300
101~200소계	156,448	32.7	200	17,210	3,442
201~300소계	180,581	37.7	300	33,120	6,624
301~400소계	69,411	14.6	400	48,480	9,696
401~500소계	19,178	4.1	500	72,760	14,552
501~1000소계	6,563	1.4	1,000	356,200	71,240
1000초과소계	49	0.0	1,200	646,320	129,264
누계	478,835	100			

- 지원의 효과가 해당 에너지 소비자에 국한됨 : 등유, LPG에 대한 지원 없음
- 전기요금할인 받지 못하는 가구 존재


6. 에너지복지법中 에너지이용권

- 전기요금: 기초생활수급자 21.6%, 차상위계층 2%

구분	쿠폰 지급	가격할인/감면	도시가스 인입	조명기기 교체	가전제품 교체	난방기기 교체	주택단열 개선	수혜대상 확대
수급가구	45 (7.4)	186 (30.4)	35 (5.7)	26 (4.3)	77 (12.6)	48 (7.8)	154 (25.2)	41 (6.7)
차상위계층	13 (5.8)	60 (26.6)	26 (11.5)	7 (3.1)	14 (6.2)	33 (14.6)	29 (12.9)	44 (19.5)
기타 저소득가구	64 (17.9)	92 (25.7)	6 (1.7)	4 (1.1)	28 (7.8)	28 (7.8)	63 (17.6)	73 (20.4)


자료: 진상현·박은철, 2009.

- 개선안
 - ➡ “에너지이용권”은 기존 수급자 가구들이 지원받고 있는 요금할인이 아닌 다른 재원으로 추가지원되어야 함




8. 이해관계자별 입장

- 지식경제부
 - 에너지복지 주도 및 전담부처
- 타 부처
 - 보건복지부: 통합복지 주도, 에너지이용권도 일원화
 - 기획재정부: 재정낭비 및 신규조직설립 반대
- 기업
 - 3대 에너지기업: 표면상 반대, 실질적 수용
 - 타 에너지기업: 적극 찬성
- 시민단체
 - 조건부 찬성: 법제화 동의, 에너지재단 단일창구 반대, 시민단체 역할 요구




9. 이해관계자별 입장


- 한국에너지재단
 - 위상강화와 법적 기반 확보 (민 → 관)
- 국회
 - 조승수 위원: 「에너지빈곤층 주택에너지 복지법」 → 「에너지복지법」
 - 장점: 에너지빈곤 개념 & 정책추진 방향 명확, 지자체 중심의 전달 체계
 - 단점: 법적 체계, 한국에너지재단의 역할 배제
- 대통령
 - 에너지복지의 진정성: 저탄소 녹색성장?
 - 요금 인상 반대 (현할인액 289억원 / 0.5%→1,600억원)



부결



V. 에너지복지의 원칙, 대안 그리고 최근 동향



에너지복지의 원칙과 대안

- 「에너지복지법(안)」의 의의 및 한계
 - 의의: 에너지복지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
 - 한계: 목적, 개념, 정책방향, 수혜대상 + 통합복지의 부재
- 「에너지복지법(안)」설립시 쟁점과 원칙
 -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최저생계비 vs 전기요금 할인
 - 원칙: 에너지복지 관련 제도 개선 = 혜택 증진
- 대안
 - 1안: Wait and See 전략
 - 제대로 된 법안 준비 (규범적 최저기준 설정)
 - 단기적 대책 (주택효율개선, 정액→정량할인)
 - 2안: PIMTOO 전략
 - 목적 중심의 법제화 전시행 (※쟁점 배제)

	최저 광열·수도비			
	전국	대도시	중소 도시	농어촌
2010 최저생계비(인)	105,320	103,150	129,168	
2007 최저생계비	=	82,390	82,350	103,799
2004 최저생계비	=	67,458	64,237	70,687
1999 최저생계비	=	51,121	51,224	54,027
1994 최저생계비	32,482	33,138	32,174	31,489
1988 최저생계비	=	16,452	16,452	15,792
2010 한국노동표준생계비	137,936	○	○	○
2010 민주노동표준생계비	136,222	○	○	○

에너지복지 관련 최근 동향

- 「에너지법(개정안)」 제출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237호

「에너지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I. 제안이유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안정적이고 일관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이용권금 신규로 도입하는 한편, 이를 전달할 기관을 지정·관리하도록 함. 아울러 에너지복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조사·확인할 수 있고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전문인력양성 中)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관련 국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에너지 복지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 등) 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발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에너지이용권 업무 및 기타 에너지 복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참고문헌

- Energie-Cités. 2007. *Action on Fuel Poverty in the Community and Social Housing*.
- National Heart Forum et al.. 2003. *Fuel Poverty+Health*, London : Wordworks.
- The City of Liverpool. 2007. *Fuel Poverty & Warm Homes : A Strategy for Liverpool*.
- 박광수. (2006).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 지식경제부. (2008). "따뜻하게 겨울나기" 대책회의 보도자료(2007.11.27)
- 진상현·박은철. (2009).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소비실태 조사·분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진상현·박은철·황인창. (2010). "에너지빈곤의 개념 및 정책대상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9권 2호.
- 진상현. (2011). "한국의 에너지복지정책에 대한 정의론 관점에서의 연구". 「행정언어와 질적연구」 2권 제1호.
- 진상현. (2011). "에너지정의(energy justice)의 개념화를 위한 시론적 연구". 「환경사회학연구」 15권 1호.

